

새생명비전교회 운영규정

- 1.전문
- 2.운영규정 제정및 개정
- 3.운영규정의 기록과 비치
- 4.공동회의 운영규정
 - 4.1.공동회의 구성
 - 4.2.정기 공동회의 소집
 - 4.3.임시 공동회의 소집
 - 4.4.정족수
 - 4.5.의결
 - 4.6.의장
 - 4.7.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 5.운영위원회
 - 5.1.운영위원회 구성
 - 5.2.운영위원의 추천과 임명
 - 5.3.소집
 - 5.4.의결
 - 5.5.의장
 - 5.6.위임 사항
- 6.목회자
 - 6.1.구성
 - 6.2.자격
 - 6.2.1.담임목사
 - 6.2.2.부목사
 - 6.2.3.전도사
 - 6.2.4.협동 목사와 협동 전도사
 - 6.2.5.실습 목사와 실습 전도사
 - 6.3.임명과 사임
 - 6.3.1.담임목사의 임명과 사임
 - 6.3.1.1.담임목사의 청빙
 - 6.3.1.2.담임목사의 사임
 - 6.3.2.부목사의 임명과 사임
 - 6.3.3.전도사의 임명과 사임
 - 6.4.임무
 - 6.4.1.담임목사의 임무
 - 6.4.2.부목사의 임무
 - 6.4.3.전도사의 임무
 - 6.5.사역자와 직원의 정년및 임기
 - 6.6.목사 및 전도사의 휴무

- 1.전문
- 2.운영규정 제정및 개정
- 3.운영규정의 기록과 비치
- 4.공동회의 운영규정
 - 4.1.공동회의 구성
 - 4.2.정기 공동회의 소집
 - 4.3.임시 공동회의 소집
 - 4.4.정족수
 - 4.5.의결
 - 4.6.의장
 - 4.7.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 5.운영위원회
 - 5.1.운영위원회 구성
 - 5.2.운영위원의 추천과 임명
 - 5.3.소집
 - 5.4.성원
 - 5.5.의결
 - 5.6.의장
 - 5.7.위임 사항
- 6.목회자
 - 6.1.구성
 - 6.2.자격
 - 6.2.1.담임목사
 - 6.2.2.부목사
 - 6.2.3.전도사
 - 6.2.4.협동 목사와 협동 전도사
 - 6.2.5.실습 목사와 실습 전도사
 - 6.3.임명과 사임
 - 6.3.1.담임목사의 임명과 사임
 - 6.3.1.1.담임목사의 청빙
 - 6.3.1.2.담임목사의 사임
 - 6.3.2.부목사의 임명과 사임
 - 6.3.3.전도사의 임명과 사임
 - 6.4.임무
 - 6.4.1.담임목사의 임무
 - 6.4.2.부목사의 임무
 - 6.4.3.전도사의 임무
 - 6.5.사역자와 직원의 정년및 임기
 - 6.6.목사 및 전도사의 휴무

7.평신도 직분자

7.1.장로

- 7.1.1.장로의 자격
- 7.1.2.장로의 구분
- 7.1.3.장로의 임무
- 7.1.4.장로의 추천 및 임명
- 7.1.5.장로의 시무 정년
- 7.1.6.장로의 사임과 사직

7.2.권사

- 7.2.1.권사의 직무
- 7.2.2.권사의 자격
- 7.2.3.권사의 구분
- 7.2.4.권사의 추천과 임명
- 7.2.5.권사의 사임과 사직

7.3.집사

- 7.3.1.집사의 구분
- 7.3.2.집사의 임무
- 7.3.3.집사의 자격
- 7.3.4.집사의 추천과 임명
- 7.3.5.집사의 사임과 사직

7.4.직분자의 언약

8.권징과 포상

- 8.1.권징과 포상의 목적
- 8.2.포상의 의의
- 8.3.포상 대상
- 8.4.징계의 의의
- 8.5.징계의 목적
- 8.6.범죄
- 8.7.책벌
 - 8.7.1.교인에게 과하는 벌
- 8.8.징계 절차

7.평신도 직분자

7.1.장로

- 7.1.1.시무 장로의 자격
- 7.1.2.장로의 구분
- 7.1.3.장로의 임무
- 7.1.4.시무 장로의 추천 및 임명
- 7.1.5.장로의 시무 정년
- 7.1.6.장로의 사임

7.2.권사

- 7.2.1.권사의 직무
- 7.2.2.권사의 자격
- 7.2.3.권사의 구분
- 7.2.4.권사의 추천과 임명
- 7.2.5.권사의 사임

7.3.집사

- 7.3.1.집사의 구분
- 7.3.2.집사의 임무
- 7.3.3.집사의 자격
- 7.3.4.집사의 추천과 임명
- 7.3.5.집사의 사임

7.4.사역자의 직무

- 7.4.1.예비목자
- 7.4.2.목자
- 7.4.3.초원지기
- 7.4.4.총괄
- 7.4.5.사역스태프

8.권징과 포상

- 8.1.권징과 포상의 목적
- 8.2.포상의 의의
- 8.3.포상 대상
- 8.4.징계의 의의
- 8.5.징계의 목적
- 8.6.범죄
- 8.7.책벌
 - 8.7.1.교인에게 과하는 벌
- 8.8.징계 절차

- 9.부설 기관
 - 9.1.원칙
- 10.회계 연도
- 11.감사 및 법률자문
 - 11.1.감사의 선임과 임기
 - 11.2.법률자문
- 13.의결 방법
 - 13.1.헌장 및 정관의 개정시
 - 13.2.교회 통합 및 해산시
 - 13.3.담임목사 청빙시
 - 13.4.장로 선출시
 - 13.5.포상,권징 및 책벌
 - 13.6.기타

- 9.위원회
- 10.부설기관
- 11.회계연도
- 12.감사 및 법률자문
 - 12.1.감사의 선임과 임기
 - 12.2.법률자문
- 13.의결 방법
 - 13.1.헌장 및 정관의 개정시
 - 13.2.교회 통합 및 해산시
 - 13.3.담임목사 청빙시
 - 13.4.장로 선출시
 - 13.5.포상,권징 및 책벌
 - 13.6.기타

1.전문: 규정에 따른 운영을 추구

1.1.본 교회는 교회 헌장에 적합한 탁월성, 회계성 그리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1.2.운영규정은 사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1.3.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경직된 운영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1.4.운영규정은 사역에 새로 참여하는 봉사자의 훈련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1.5.운영규정은 본 교회의 헌장에 그 근거를 두며 헌장과 상충할 경우 헌장이 우선한다.

2.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2.1.최초 운영규정의 제정은 공동회의에서 정한다.

2.2.운영규정 제정과 개정: 교회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하며 운영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하고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운영규정의 기록과 비치

2.3.운영규정은 교회 사무실에 항상 최근 개정판 규정록으로 비치해야 한다.

2.4.새로 제정된 운영규정은 즉시 비치된 규정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 규정에 따른 운영을 추구

1.1.본 교회는 교회 헌장에 적합한 탁월성, 회계성 그리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1.2.운영규정은 사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1.3.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경직된 운영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1.4.삭제

1.4.운영규정은 본 교회의 헌장에 그 근거를 두며 헌장과 상충할 경우 헌장이 우선한다.

2.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2.1.최초 운영규정의 제정은 공동회의에서 정한다.

2.2.운영규정 제정과 개정: 교회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하며 운영위원회 출석 2/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고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운영규정의 기록과 비치

3.1.운영규정은 교회 사무실에 항상 최근 개정판 규정록으로 비치해야 한다.

3.2.새로 개정된 운영규정은 비치된 규정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2.5.운영규정 관리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 있고 운영위원회는 세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3.3.운영규정 관리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사항(세칙)을 둘 수 있다.

4.공동회의 운영규정

4.공동회의 운영규정

4.1 공동회의 구성

4.1 공동회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한다

4.1.1.정회원: 공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자로 구성된다.

4.1.1.정회원: 정회원은 아래와 같다

4.1.1.1 공동회의 정회원은 본 교회 등록과정을 거쳐 등록한 교인이어야 한다.

4.1.1.1 정회원은 본 교회 등록과정을 거쳐 등록한 교인이어야 한다.

4.1.1.2 공동회의 정회원은 침례 또는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4.1.1.2.정회원은 침례 또는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4.1.1.3 공동회의 정회원은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4.1.1.3 정회원은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4.1.1.4 교인 등록 과정은 본 교회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필수로 포함할 수 있다.

4.1.1.4 교인 등록 과정은 본 교회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필수로 포함할 수 있다.

4.1.2. 준회원:

4.1.2. 준회원

4.1.2.1.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공동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공동회의 준회원이 된다.

4.1.2.1.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정회원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준회원이 된다.

4.1.2.2.공동회의 준회원은 회의 참관은 할 수 있으나 투표의 권한은 갖지 못한다.

4.1.2.2.준회원은 회의 참관은 할 수 있으나 투표의 권한은 갖지 못한다.

4.1.2.3.준회원은 제직이 될 수 없다

4.1.3. 회원 자격 상실

4.1.3.회원(교인) 자격 상실

4.1.3.1.정당한 사유 없이 타 교회에 등록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1.3.1.정당한 사유 없이 타 교회에 등록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1.3.2.1 년 이상 주일 예배에 무단 결석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1.3.2. 1 년 이상 주일 예배에 무단 결석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4.1.3.3.비 기독교적인 행동 등 특별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4.1.3.3.비기독교적인 행동 등 특별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4.1.4.회원 (교인)의 권리와 의무

4.1.4.회원 (교인)의 권리와 의무

4.1.4.1 본 교회의 교인은 본 운영규정과 헌장에 규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1.4.1 본 교회의 교인은 본 운영규정과 헌장에 규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1.4.2.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기 예배, 회의 및 모임에 출석해야 하며, 사역과 헌금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정한 각종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4.1.4.2.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기 예배, 회의 및 모임에 출석해야 하며, 사역과 헌금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정한 각종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4.1.4.3 본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 정교인(정회원)에 한한다.

4.1.4.3 본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 정교인(정회원)에 한한다.

4.2. 정기 공동회의 소집

4.2. 정기 공동회의 소집

4.1.1.연 예산과 사역 계획의 심의와 헌장과 운영규정에 따른 직분자 선출을 위한 정기 공동회의는 1 년에 1 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4.2.1.연 예산과 사역 계획의 심의와 헌장과 운영규정에 따른 직분자 선출을 위한 정기 공동회의는 1 년에 1 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4.1.2.정기공동회의 소집은 1 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4.2.2.정기공동회의 소집은 1 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4.1.3.본 교회 각 사역부서 및 기관은 연간 활동 상황을 정기 공동회의 이전에 서면 보고한다. 단 회중에게는 영상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4.2.3.본 교회 각 사역부서 및 기관은 연간 활동 상황을 정기 공동회의 이전에 서면 보고한다. 단 회중에게는 영상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4.3. 임시 공동회의 소집

4.3. 임시 공동회의 소집

4.3.1.임시 공동회의는 최소 1 주전 공고하고 사전 공시된 안건만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단 사전 공시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공동 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안건에 한해 직권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4.3.1.임시 공동회의는 최소 1 주전 공고하고 사전 공시된 안건만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현 행

4.3.2.임시 공동회의는 다음 각각의 경우 소집해야 한다.

4.3.2.1 운영위원회 재적 2/3 이상 청원이 있을 때

4.3.2.2 제직회 회원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3.2.3 교회 정회원 1/4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4 정족수

정기 공동회의와 임시 공동회의 정족수는 회의장 참석 인원을 정족수로 한다.

4.5 의결

4.5.1.교회 헌장의 개정, 교회 통합 및 해산, 담임목사의 청빙, 임명과 면직 및 사임, 장로 임명, 권사 임명, 안수집사 임명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5.2. 4.5.1 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 안건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6 의장

담임목사가 공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 유고시 수석부목사, 운영위원회 서기의 순으로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4.7 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공동회의의 서기가 공동회의의 의결내용에 따라 작성한 '공동회의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서기가 공동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효력을 갖는다. 공동회의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담당한다.

개 정(안)

4.3.2.임시 공동회의는 다음 각각의 경우 소집해야 한다.

4.3.2.1 운영위원회 재적 1/3 이상 청원이 있을 때

4.3.2.2 제직회 회원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3.2.3 교회 정회원 1/4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4 정족수

정기 공동회의와 임시 공동회의 정족수는 회의장 참석 인원을 정족수로 한다.

4.5 의결

4.5.1.교회 헌장의 개정, 교회 통합 및 해산, 담임목사의 청빙, 임명과 면직 및 사임, 장로 임명, 권사 임명, 안수집사 임명은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5.2. 4.5.1 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 안건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6 의장

담임목사가 공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 유고시 수석부목사, 운영위원회 서기의 순으로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4.7 대내외 의결 표시 방법

공동회의의 서기가 공동회의의 의결내용에 따라 작성한 '공동회의 의결서'에 담임목사와 서기가 공동 서명함으로써 대내외적 법적효력을 갖는다. 공동회의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담당한다.

5. 운영위원회

5.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수석부목사를 포함하여 최소 9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서기 1인을 둔다.

5.2 운영위원의 추천과 임명: 운영위원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공동회의 2/3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휴직후 공동회의 신임을 통해 재시무 할 수 있다. 2회 시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창립 운영위원회에 한해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 소집: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임시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혹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5.4 의결: 회의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헌장과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제외한다.

5.5 의장: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의장유고시 수석부목사, 운영위원회 서기 순으로 임시의장을 맡는다.

5.6 위임 사항

5.6.1 교회 헌장의 개정을 발의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6.2.교회 재산의 획득 및 처분을 의결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5.6.3.교회의 통합 및 해산에 대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6.4.목회자, 선교사, 제직, 직원 등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5. 운영위원회

5.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수석부목사,시무장로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서기 1인을 둔다. 7인 미달시 목양장로중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로 총원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2 운영위원의 추천과 임명: 운영위원중 시무장로는 공동회의 2/3의 찬성으로 임명된다.임기는 안수후 만 3년이 되는 당해년도 연말까지로 한다.1년 휴직후 공동회의 신임을 통해 재시무 할 수 있다. 2회 시무를 초과할 수 없다.

5.3 소집: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임시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혹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5.4 성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제적 2/3 이상의 출석을 성원으로 한다

5.5 의결: 회의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헌장과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제외한다.

5.6 의장: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의장유고시 수석부목사, 운영위원회 서기 순으로 임시의장을 맡는다.

5.7 위임 사항

5.7.1.교회 헌장의 개정을 발의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7.2.교회 재산의 획득 및 처분을 의결하여 제직회에 보고한다.

5.7.3.교회의 통합 및 해산에 대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7.4. 목회자, 선교사, 제직, 직원 등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현 행

5.6.5.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경우, 교회의 비전과 목회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5.6.6.결산보고 및 예산을 심의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6.7.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추후 제직회에 보고한다.

5.6.8.담임목사 청빙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임 및 유고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장에 따라 대처한다.

5.6.9.헌장, 운영규정과 하부 규정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발의및 심의한다.

5.7 운영위원회 세칙: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 결의에 의해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목회자: 목회자는 교회의 목회를 위해 청빙되어 임명된 직분자이다

6.1.구성
목회자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로 구성된다.

6.2. 자격

6.2.1. 담임목사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6.2.2. 부목사

6.2.2.1.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 기관에서 신학(목회학 석사, M.Div.)을

개 정(안)

5.7.5.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경우, 교회의 비전과 목회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5.7.6.결산보고 및 예산을 심의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한다.

5.7.7.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추후 제직회에 보고한다.

5.7.8.담임목사 청빙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임 및 유고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장에 따라 대처한다.

5.7.9. 헌장, 운영규정과 하부 규정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발의및 심의한다.

5.8 운영위원회 세칙: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 결의에 의해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목회자: 목회자는 교회의 목회를 위해 청빙되어 임명된 직분자이다

6.1.구성
목회자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로 구성된다.

6.2. 자격

6.2.1. 담임목사
청빙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6.2.2. 부목사

6.2.2.1.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 기관에서 신학(목회학 석사, M.Div.)을

졸업한 무흠 교인으로 7 년을 경과한 27 세 이상된 자 &

졸업한 무흠 교인으로 7 년을 경과한 27 세 이상된 자

6.2.2.2.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이나 기관에서 실시한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안수받은 자 &

6.2.2.2.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이나 기관에서 실시한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안수받은 자

6.2.2.3. 성도의 본이 되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6.2.2.3. 성도의 본이 되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6.2.3.전도사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졸업을 한 자.

6.2.3.전도사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졸업을 한 자.

6.2.4.협동 목사와 협동 전도사
목사와 전도사로서 청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직분을 가리킨다.

6.2.4.협동 목사와 협동 전도사
목사와 전도사로서 청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직분을 가리킨다.

6.2.5.실습 목사와 실습 전도사
일정 기간 수습을 목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목사와 전도사를 가리킨다.

6.2.5.실습 목사와 실습 전도사
일정 기간 수습을 목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목사와 전도사를 가리킨다.

6.3. 임명과 사임

6.3. 임명과 사임

6.3.1. 담임목사의 임명과 사임

6.3.1. 담임목사의 임명과 사임

6.3.1.1. 담임목사의 청빙

6.3.1.1. 담임목사의 청빙

6.3.1.1.1.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장로 5 명이상의 청빙위원은 후보 담임 목사를 선정한 후 운영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담임목사를 공동회의에 추천한다.

6.3.1.1.1.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장로 5 명이상의 청빙위원은 후보 담임 목사를 선정한 후 운영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담임목사를 공동회의에 추천한다.

6.3.1.1.2.청빙위원회는 후보 담임목사에게 청빙서를 보내, 수락을 받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송부한다.

6.3.1.1.2.청빙위원회는 후보 담임목사에게 청빙서를 보내, 수락을 받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송부한다.

6.3.1.1.3. 운영위원회는 청빙건 의제에 대해 1 주전에 공고하고 제직회와 공동회의 출석 정회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 후보를 결정한다.

6.3.1.1.3. 운영위원회는 청빙건 의제에 대해 1 주전에 공고하고 공동회의 출석 정족수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 후보를 결정한다.

6.3.1.2. 담임목사의 사임

6.3.1.2.1.담임목사 혹은 교회는 최소 1 개월 전에 사의 표명 또는 권고사직 요청을 해야 한다.

6.3.1.2.2. 담임목사가 사의를 표명하면 운영위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로 공동회의를 개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임이 수리 된다.

6.3.1.2.3. 담임목사의 사임을 요청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공동회의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임안을 통과시킨다. 운영위원회는 사임에 관한 후속 절차를 관장한다.

6.3.2. 부목사의 임명과 사임

6.3.2.1.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부목사의 임기는 1 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6.3.2.2.임기중 부목사가 인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미달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다.

6.3.3. 전도사의 임명과 사임

6.3.3.1.전도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 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6.3.3.2.임기 중 전도사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 미달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다.

6.4. 임무

6.4.1. 담임목사의 임무

6.3.1.2. 담임목사의 사임

6.3.1.2.1.담임목사 혹은 교회는 최소 1 개월 전에 사의 표명 또는 권고사직 요청을 해야 한다.

6.3.1.2.2.담임목사가 사의를 표명하면 운영위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로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임이 수리 된다.

6.3.1.2.3. 담임목사의 사임을 요청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임안을 통과시킨다. 운영위원회는 사임에 관한 후속 절차를 관장한다.

6.3.2. 부목사의 임명과 사임

6.3.2.1.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부목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6.3.2.2.부목사는 3 년마다 운영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한 재신임 투표를 받으며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연임된다.평가기준은 삶의 순결성,교리의 순수성,임무수행 능력및 관계성에 의한다.

6.3.3. 전도사의 임명과 사임

6.3.3.1.전도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 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6.3.3.2.임기 중 전도사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 미달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다.

6.4. 임무

6.4.1. 담임목사의 임무

6.4.1.1.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6.4.1.1.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6.4.1.2.담임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각종 경조 집회, 각종 대내외 집회 및 행사 등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위임된 모든 사역을 수행한다.

6.4.1.2.담임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각종 경조 집회, 각종 대내외 집회 및 행사 등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위임된 모든 사역을 수행한다.

6.4.1.3. 담임목사는 공동회의, 제직회, 운영위원회 사역팀의 의장이 된다

6.4.1.3.담임목사는 공동회의, 제직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6.4.1.4.부목사의 대외 활동은 담임목사가 감독한다.

6.4.2. 부목사의 임무

6.4.2. 부목사의 임무

6.4.2.1.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맡겨진 고유의 책임과 사역을 수행한다.

6.4.2.1.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맡겨진 고유의 책임과 사역을 수행한다.

6.4.2.2.담임목사는 수석 부목사를 지명할 수 있고, 담임목사 부재시 수석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임무를 대행한다.

6.4.2.2.담임목사는 수석 부목사를 지명할 수 있고, 담임목사 부재시 수석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임무를 대행한다.

6.4.2.3.부목사의 대외 활동은 담임목사가 감독한다.

6.4.3.전도사의 임무

6.4.3.전도사의 임무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여된 임무를 담당한다.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여된 임무를 담당한다.

6.5. 사역자와 직원의 정년 및 임기

6.5. 교역자의 정년 및 임기

6.5.1.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역자와 직원의 정년은 미국 주류 교계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담임목사의 정년은 예외로 하고 운영위원회 및 공동회의의 결의로 조정한다.

6.5.1. 모든 교역자와 직원의 정년은 65 세로 하고, 담임목사의 정년은 70 세로 한다

6.5.2.기타 유급직원 및 교회 직분자의 정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교회의 내부 인사규정을 따른다.

6.6.목사 및 전도사의 휴무
 시무 중에 있는 목사 및 전도사가 휴양이나 신학연구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휴무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안식년은 교회가 정한 인사 규정에 준한다.

6.6. 교역자의 안식년
 안식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7. 평신도 직분자

7. 평신도 직분자

7.1 장로

7.1 장로

7.1.1.장로의 자격

7.1.1.시무 장로의 자격

장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시무 장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7.1.1.1.무흠 정회원으로 최초 등록한지 7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본교회 창립에 따른 대상자의 최초 등록일 기준 산정은 운영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다.)

7.1.1.1.정회원으로 최초 등록한지 7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7.1.1.2.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이 있는 35세 이상된 남자로 한다.

7.1.1.2.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이 있는 40세 이상된 남자로 한다.

7.1.1.3.안수 집사로 3년 이상된 자로 한다.

7.1.1.3.안수 집사로 3년 이상된 자로 한다.

7.1.1.4.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로 한다.

7.1.1.4.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로 한다.

7.1.1.5.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이어야 한다.

7.1.1.5.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이어야 한다.

7.1.1.6.디모데전서 3장 1-7 절에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7.1.1.6.디모데전서 3장 1-7 절에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7.1.1.7.셀교회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이어야 한다.

7.1.1.7.목자로서 1년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7.1.1.8.소경의 장로 지도자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로 한다.

7.1.1.8.소경의 지도자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로 한다.

7.1.1.9.성경지식과 임직수행에 상당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한다.

7.1.1.9.성경지식과 임직수행에 상당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한다.

7.1.1.10. 직업이 정당한 자로 한다

7.1.1.10. 직업이 정당한 자로 한다

7.1.2. 장로의 구분

7.1.2.1. 시무장로: 본 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섬기는 장로이다.

7.1.2.2. 사역장로: 본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로 사역을 맡고 있는 장로이다.

7.1.2.3.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장로로서 본 교회 정회원이 된 후 2 년이
경과한 자로 교회 사역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장로이다. 단, 본 교회가 정한 협동장로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7.1.2.4. 휴무장로: 1 년 이상의 장기 출타,
혹은 개인사정으로 교회 출석이 불가능한
장로이다. 단, 본 교회가 정한 휴무장로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7.1.2.5. 은퇴장로: 본 교회 시무 및
사역장로로 섬기다가 65 세를 지난 장로이다.

7.1.2.6. 원로장로: 은퇴장로 중에 교회에
정당한 공로가 있는 장로이다. 단, 본 교회가
정한 원로장로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7.1.2.7. 명예장로: 장로 피택 연령을 초과한
안수집사의 경우, 운영위원회 및 공동회의의
인준을 거쳐 명예 장로를 임명할 수 있다.

7.1.3. 장로의 임무

7.1.3.1.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며 교리를
바로 알도록 지도한다.

7.1.3.2. 목회자를 도와 사역, 치리 및 권징을
담당한다.

7.1.3.3.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 권면한다.

7.1.3.4. 담임목사의 유고 시에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할 수 있다.

7.1.2. 장로의 구분

7.1.2.1. 시무장로: 본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이며 3 년 2 회 운영위원으로 섬기는
장로이다.

7.1.2.2. 목양장로: 시무장로로 임기를 마친
장로이다.

7.1.2.3. 원로장로: 만 70 세 이상의
목양장로중 교회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로
운영위원회 결의로 임명한다.

7.1.2.4. 명예장로: 만 70 세 이상의 안수집사
로 운영위원회 결의로 임명된다.

7.1.2.5. 전입장로: 타교회에서 본교회로
전입한 장로를 칭한다

7.1.2.6. 협동장로: 정회원으로 만 2 년이 경과
한 전입장로로 교회 사역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장로이다. 목회자(Full Time),
운영위원회 위원, 목사 및 사역팀장의
연합회의 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결의로 임명되며, 임명 3 년후 시무장로를
위한 후보가 될 수 있다.

7.1.3. 장로의 임무

7.1.3.1.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며 교리를
바로 알도록 지도한다.

7.1.3.2. 목회자를 도와 사역, 치리 및 권징을
담당한다.

7.1.3.3.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 권면한다.

7.1.4. 장로의 추천 및 임명

7.1.4.1. 장로: 상기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로 안수집사 혹은 협동장로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시무한 만 35세 이상의 남자 집사로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자로 한다. 목회자, 운영위원회 위원, 사역팀에서 1차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목회팀 및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2차 추천하고 공동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1차 추천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세부 규정으로 정한다.

7.1.4.2. 휴무장로 및 원로장로는 모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준된다.

7.1.5. 장로의 시무 정년

시무장로의 시무 연령은 65세를 맞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7.1.6. 장로의 사임과 사직

7.1.6.1.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7.1.6.1.1. 장로에게 건강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

7.1.6.1.2. 장로의 과오가 있거나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할 수 있다.

7.1.4. 시무 장로의 추천 및 임명

7.1.4.1. 상기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로 안수집사 혹은 협동장로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7.1.4.2. 목회자(Full Time), 운영위원회 위원, 목사 및 사역팀장의 연합회의에서 당해에 필요한 장로의 4 배수를 목회팀 및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7.1.4.3. 목회팀 및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4 배수를 연석회의(Full Time 목회자와 운영위원의 동수로 구성)를 통하여 당해에 필요한 장로의 2 배수로 공동회의에 추천한다. 투표방법은 투표 전에 결정한다

7.1.4.4. 공동회의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7.1.4.5. 피택된 장로는 임직후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며 담임목사의 임명으로 사역단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7.1.4.6. 협동장로, 원로장로 및 명예장로는 모두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인준된다.

7.1.5. 장로의 시무 정년

시무장로의 시무 연령은 65세를 맞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7.1.6. 장로의 사임

7.1.6.1.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7.1.6.1.1. 장로에게 건강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

7.1.6.1.2. 장로의 과오가 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행위등으로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할 수 있다.

7.1.6.1.3.중대한 과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행위등으로 정상적인 장로 시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장로의 권고 사임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 사임은 효력을 발생한다

7.1.6.1.3. 중대한 과오등으로 정상적인 장로 시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장로의 권고 사임을 요청 할 수 있다. 권고 사임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회의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 사임은 효력을 발생하며 공동회의에서 결의된 권고 사임은 공동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될 수 있다

7.1.6.1.4.사임은 임명된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오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1.6.1.4.사임은 임명된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오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1.6.2. 장로의 휴무

7.1.6.2. 장로의 휴무

7.1.6.2.1.장로가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7.1.6.2.1.장로가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7.1.6.2.2.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휴무한 장로는 자동으로 사직하게 된다.

7.1.6.2.2.정당한 사유 없이 1 년 이상 휴무한 장로는 자동으로 사임하게 된다.

7.1.6.2.3.사역팀에 6 개월 이상 연속 결석 시는 자동 휴무로 한다.

삭제

7.1.6.3. 장로의 복직

7.1.6.3. 장로의 복직

7.1.6.3.1.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7.1.6.3.1.자의 사임자의 경우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7.1.6.3.2.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후 1 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운영위원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7.1.6.3.2.권고 사임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후 1 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운영위원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7.1.6.3.3.사직 장로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7.1.6.3.3. 사임 장로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현 행

개 정(안)

7.2. 권사

7.2. 권사

7.2.1. 권사의 직무

7.2.1. 권사의 직무

7.2.1.1.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7.2.1.1.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7.2.1.2.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7.2.1.2.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7.2.2. 권사의 자격

7.2.2. 권사의 자격

7.2.2.1. 무흠 정회원으로 최초 등록 7년 이상된 여자 집사 (본교회 창립에 따른 대상자의 최초 등록일 기준 산정은 운영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다.)

7.2.2.1. 정회원으로 최초 등록 5년 이상된 여자 집사

7.2.2.2. 서리 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50세 이상 된 자

7.2.2.2. 서리 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55세 이상 된 자

7.2.2.3.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7.2.2.3.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7.2.2.4.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7.2.2.4.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7.2.2.5. 셀교회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동체 및 사역팀에서 충성되어 섬기는 자

7.2.3. 권사의 구분

7.2.3. 권사의 구분

7.2.3.1. 시무권사: 시무권사는 현재 취임하여 시무하고 있는 권사이다.

7.2.3.1. 시무권사: 시무권사는 현재 취임하여 시무하고 있는 권사이다.

7.2.3.2. 협동권사: 협동권사는 전입한 권사로서 소정의 훈련을 받고, 본 교회가 정한 인준절차를 거친 자이다.

7.2.3.2.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권사로서 정회원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소정의 훈련을 받고, 본 교회가 정한 인준절차를 거친 자이다.

7.2.3.3. 명예권사: 필요에 따라 명예권사를 둘 수 있다

7.2.4. 권사의 추천과 임명

7.2.4. 권사의 추천과 임명

현 행

7.2.4.1.시무권사:담당 공동체 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회의 2/3 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7.2.4.2.협동권사:협동권사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협동 권사로서 1 년 이상이 경과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7.2.5. 권사의 사임과 사직

7.2.5.1. 자의 사임 또는 사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자의로 시무를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7.2.5.2. 권고 사임 또는 사직: 권사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과오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 또는 사직케 할 수 있다

7.3. 집사

7.3.1. 집사의 구분

7.3.1.1.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이며 항존직이다.

7.3.1.2. 협동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온 안수집사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받고 본 교회가 정한 인준절차를 거친 자이다.

7.3.1.3.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되고 자원한 직분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 년이다.

개 정(안)

7.2.4.1.시무권사: 공동체 목회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회의 2/3 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7.2.4.2.협동권사:협동권사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협동 권사로서 1 년 이상이 경과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시무권사가 된다.

7.2.4.3.명예권사: 연령을 초과한 서리집사의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로 명예 권사로 임명 된다.

7.2.5. 권사의 사임

7.2.5.1. 자의 사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7.2.5.2. 권고 사임: 권사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과오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할 수 있다

7.3. 집사

7.3.1. 집사의 구분

7.3.1.1.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이며 항존직이다.

7.3.1.2. 협동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온 안수집사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받고 본 교회가 정한 인준절차를 거친 자이다.

7.3.1.3.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되고 자원한 직분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 년이다.

7.3.2. 집사의 임무

집사는 초대교회가 사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웠던 것과 같이 교회의 택함을 받아(행 6:4)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7.3.3. 집사의 자격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딤후 3:8),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행 6:4)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7.3.3.1. 만 25 세 이상된 무흠 입교인으로 2 년을 경과한 자

7.3.3.2.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7.3.3.3.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자

7.3.3.4. 직업이 정당한 자

7.3.3.5. 디모데전서 3:8-10 에 해당하는 자

7.3.3.6. 소정의 집사 교육을 받은 자

7.3.4. 집사의 추천과 임명

7.3.4.1. 안수집사: 30 세 이상의 서리집사 중에서 3 년 이상 봉사한 자로서 목회자, 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사역팀에서 추천하고 소정의 훈련과정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회의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 (본교회 창립에 따른 대상자의 최초 등록일 기준 산정은 운영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다.)

7.3.2. 집사의 임무

집사는 초대교회가 사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웠던 것과 같이 교회의 택함을 받아(행 6:4)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7.3.3. 집사의 자격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딤후 3:8),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행 6:4)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7.3.3.1. 만 25 세 이상된 정회원으로 2 년을 경과한 자 또는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받고 정회원으로 1 년이 경과된 자

7.3.3.2.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7.3.3.3.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자

7.3.3.4. 직업이 정당한 자

7.3.3.5. 디모데전서 3:8-10 에 해당하는 자

7.3.3.6. 소정의 집사 교육을 받은 자

7.3.3.7.목장에 참여하는 자

7.3.4. 집사의 추천과 임명

7.3.4.1. 안수집사: 30 세 이상의 서리집사 중에서 3 년 이상 봉사하고 예비목자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셀교회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동체및 사역팀에서 충성되어 섬기는 자를 목회자(Full Time), 운영위원회 위원,목자및 사역팀장의 연합회의 에서 추천하고 소정의 훈련과정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회의 출석 정족수 2/3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7.3.4.2. 협동안수집사: 타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로서 본 교회 등록 후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후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 공동회의에서의 인준을 거친 자로 한다. 협동안수 집사 취임후 1 년 경과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안수집사로 임명될 수 있다.

7.3.4.3. 서리집사: 만 25 세 이상된 정교인 중 목회자, 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사역팀의 추천과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회의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

7.3.5. 집사의 사임과 사직

7.3.5.1. 자의 사임 또는 사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자의로 시무를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7.3.5.2. 권고 사임 또는 사직: 집사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과오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 또는 사직케 할 수 있다

7.4. 직분자의 언약

추천된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정하는 직분자의 언약에 동의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약속을 해야 한다.

7.3.4.2. 협동안수집사: 타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회 등록 후 2 년이 경과 한 자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친후 담임목사의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협동안수 집사로 임명되며, 취임후 1 년 경과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회의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수집사로 임명 된다.

7.3.4.3. 서리집사: 만 25 세 이상된 정회원 중 공동체 목회자의 추천과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회의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

7.3.5. 집사의 사임

7.3.5.1. 자의 사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7.3.5.2. 권고 사임: 집사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과오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할 수 있다

7.4. 사역자의 직무

7.4.1.예비목자:목장에서 목자의 추천을 받아 예비목자교육을 수료한 자

7.4.2.목자:목자는 목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7.4.3.초원지기:두 개 이상의 목장을 분가하고 3 세대를 이룬 목자나 목양장로중 목장 사역에 본이 되는 경우 초원지기로 임명된다.초원지기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협력하여 목자와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7.4.4 총괄

7.4.4.1.시무 안수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이며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통솔력과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을 갖춘자로한다.

7.4.4.2.단장을 보좌 하며 팀원들과 함께 맡겨진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며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7.4.4.3.총괄은 같은 사역단에서 2년 이상 연임을 할 수 없다.

7.4.4.4.총괄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7.4.5.사역 스텝

7.4.5.1.스텝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괄의 추천을 받아 사역 단장이 임명한다.

7.4.5.2.스텝은 1인 1 사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2 사역이 될 경우 해당 사역단장과 지도 목사의 협의하에 가능하며 2 사역 이상은 삼가하도록 권한다.

8. 권징과 포상

8.1.권징과 포상의 목적

권징과 포상의 목적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성경에 부합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룩하는 데 있다.

8.2.포상의 의의

성도들로 하여금 선행을 권장하고 모범을 삼기 위하여 주님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한다.

8.3.포상의 대상

교역자나 평신도가 선교 및 전도 사업, 또는 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포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 권징과 포상

8.1.권징과 포상의 목적

권징과 포상의 목적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성경에 부합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룩하는 데 있다.

8.2.포상의 의의

성도들로 하여금 선행을 권장하고 모범을 삼기 위하여 주님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한다.

8.3.포상의 대상

교역자나 평신도가 선교 및 전도 사업, 또는 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포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4. 징계의 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행사하여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법상 범죄한 교인이나 제직을 권고하며 책벌하는 것이다.

8.5.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다.

8.6. 범죄

8.6.1.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과 행위

8.6.2. 교회 헌장,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

8.6.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 부덕스럽게 하는 행위

8.7. 책벌

징계위원회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는 판결로서 벌을 정한다. 심판으로 정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8.7.1. 교인에게 과하는 벌

8.7.1.1. 권계

8.7.1.2. 견책

8.7.1.3. 수찬 정지

8.7.1.4. 정회원 및/혹은 준회원 자격 박탈

8.7.1.5. 출교

8.7.2. 제직에게 과하는 벌

8.4. 징계의 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행사하여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법상 범죄한 교인이나 제직을 권고하며 책벌하는 것이다.

8.5.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다.

8.6. 범죄

8.6.1.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과 행위

8.6.2. 교회 헌장,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

8.6.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 부덕스럽게 하는 행위

8.7. 책벌

징계위원회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는 판결로서 벌을 정한다. 심판으로 정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8.7.1. 교인에게 과하는 벌

8.7.1.1. 경고

8.7.1.2. 근신

8.7.1. 교인에게 과하는 벌

8.7.1.4. 정회원 혹은 준회원 자격 박탈

8.7.1.5. 출교

8.7.2. 제직에게 과하는 벌

현 행

8.7.2.1. 시무 정지

8.7.2.2. 시무 해임

8.7.2.3. 정직

8.7.2.4. 면직

8.8.징계의 절차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 부설기관

9.1. 원칙

6.1.1.본 교회는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6.1.2.부설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증설 또는 개편할 수 있다.

6.1.3.부설기관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개 정(안)

8.7.2.1. 시무 정지

8.7.2.2. 시무 해임

8.7.2.3. 정직

8.7.2.4. 면직

8.8.징계의 절차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 위원회

9.1.본 교회는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사권을 행한다

9.2.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증설 또는 개편할 수 있다.

9.3.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0. 부설기관

10.1 본 교회는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사권을 행한다

10.2.부설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증설 또는 개편할 수 있다.

10.3.부설기관은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0.4.본 교회 담임목사로서 15년 이상 목회 하고 퇴직한 경우 교회는 은퇴후 사역을 지원하며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단 초대 담임목사는 사역 년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그 다음 해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11. 감사 및 법률자문

11.1 감사의 선임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감사위원회를 구성, 교회의 재정 사용 내역 및 투명성을 감독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재정 규모를 감사하기에 충분히 공인된, 외부 전문 감사회사 혹은 감사기관을 선정, 재정 감사를 할 수 있다.

11.2. 법률자문

운영위원회는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12. 의결 방법

모든 회의시 안건을 처리할 때 의장은 투표 방법을 회원에게 물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12.1. 헌장 및 정관의 개정시

12.2. 교회 통합 및 해산시

12.3. 담임목사 청빙시

12.4. 장로 선출시

12.5. 포상, 권징 및 책벌

12.6. 기타: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경우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공동회의에서 승인된 때부터 유효하다
원본: 한글판을 원본으로 한다

11.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그 다음 해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12. 감사 및 법률자문

12.1 감사의 선임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감사위원회를 구성, 교회의 재정 사용 내역 및 투명성을 감독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재정 규모를 감사하기에 충분히 공인된, 외부 전문 감사회사 혹은 감사기관을 선정, 재정 감사를 할 수 있다.

12.2. 법률자문

운영위원회는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13. 의결 방법

모든 회의시 안건을 처리할 때 의장은 투표 방법을 회원에게 물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13.1. 헌장 및 정관의 개정시

13.2. 교회 통합 및 해산시

13.3. 담임목사 청빙시

13.4. 장로 선출시

13.5. 포상, 권징 및 책벌

13.6. 기타: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경우

부칙: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본: 한글판을 원본으로 한다

